적합성평가 현황 비검색 기간 설정 방법 안내

RRA KSDB 제20호 (2022.12.20.)

7 H	0
/ / II	

- o 신제품 개발 보호 등을 위해서 기자재를 유통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 정보가 '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현황'에 검색되지 않도록 기간 제한없이 설정* 가능함에 따라 그 방법을 공유
 - * 최초 설정은 최대 60일 이내에서 가능하고, 그 이후에는 변경신고로 기간 제한없이 설정 가능

□ 근 거

- o「전파법」제58조의2(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)
- o 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제5조(적합인증의 신청 등), 제8조(적합등록의 신청 등), 제11조(잠정인증의 신청 등)

□ 내용

- o 적합성평가 현황 비검색기간 설정 방법은 아래와 같음
- ① (비검색기간 최초 설정) 적합성평가 신청에서 인증현황 비공개 기간 설정
- 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>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(적합인증/ 적합등록/잠정인증) 신청 > 인증현황 비검색기간 선택(최대 60일 내에서 설정 가능) ☑ 인증현황 비검색기간 선택

변경(단순)신고를 통해 횟수 제한 없이 60일 이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(즉시 조회 가능시에는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.) 인증현황 비검색기간 일 (최대 60일, 숫자만 입력가능합니다.)

› 적합성평가 후 기자재를 유통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최초 60일 미내에서 비공개설정이 가능하며,

② (비검색기간 연장/단축) 적합성평가 변경 신고에서 비공개기간 연장/단축 설정

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>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변경 신고 > 변경 사항 선택(비공개기간 연장/단축 선택) > 대상 기자재 선택 > 비공개기간 설정 (기간 제한없이 설정가능하며, 변경완료 후 동일 방법으로 연장/단축 설정가능)



* <u>적합성평가 현황 비검색기간 중에는 해당 기자재를 유통하지 않아야 하며,</u> 비검색기간 중 해당 기자재 유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자재 정보가 즉시 공개됨